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7. 8 선고 2020가단12262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 2020. 6. 24.

판결 선고 2020. 7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3. 30.부터 2020. 6. 12.까지 연 5%,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임차인 C 보증금 210,000,000원 전세금보증신용보험계약 보험금 지급 구상.

판사이형주